

「2025 지역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」 가이드라인

1 사업대상 공모 및 선정 절차

○ 모집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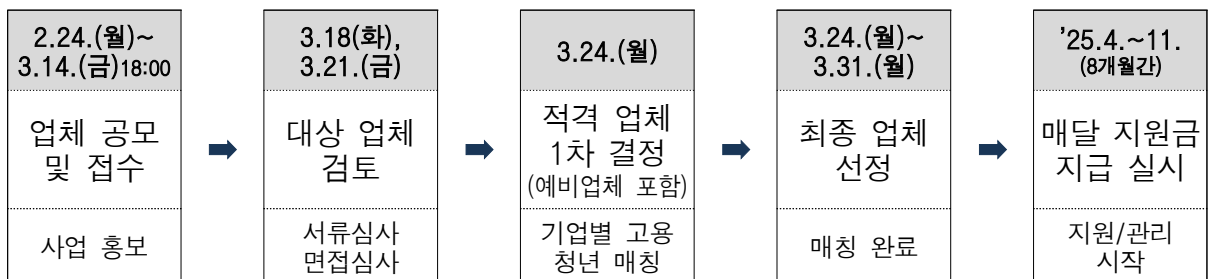
- 공모 절차에 따라 신청한 업체를 검토하여 적격업체 선정
- 적격업체 중 청년을 고용한 업체를 최종 지원업체로 선정
※ 미선정 업체도 추후 대체고용 대상 목록에 후(後)순위 업체로 포함

○ 적격업체 검토·결정

- 기업의 규모, 설립연도, 건전성 등 종합판단하여 기업지원 여부 검토
→ 기업 판단을 위한 외부 전문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지원여부 결정

○ 최종업체 선정

- 지역 청년을 신규 고용한 업체를 최종 지원업체로 20개사 내외 선정
→ 기한 내 적격업체의 고용 불가시, 후순위 업체에 기회 제공



< 업체 선정과정 >

○ 상세 선정절차

- 심사 절차

1) 기본자격조건 검토

→ 3.17.(월) 필수 구비서류 누락없이 제출하였는지 확인

→ 동일 청년에 대한 유사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 신청 및 부적격 업체 신청 방지를 위하여 '참여기업 사실확인서'의 대표자 확약 징구

※ 참여기업 기본자격요건

1)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기업

2) 임금체불 명단에 공표되지 아니한 기업

3) 중대 산업재해 발생 명단에 공표되지 아니한 기업

2) 서류심사

→ 3.18.(화) 14:00 청년센터 활동그래 (예정)

→ 산(産)·학(學)·연(研) 외부 전문가로서 심사위원 3명 구성

→ 서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업체의 1.5배수 내외 선발

※ 심사 절차에 따른 세부평가표 및 선발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

3) 면접심사

→ 3.21.(금) 10:00 청년센터 활동그래 (예정)

→ 산(産)·학(學)·연(研) 외부 전문가로서 심사위원 3명 구성

→ 독립심사를 통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역량평가 실시

→ 고득점순으로 적격업체 20~25개사 내외 선발(예비업체 포함)

※ 중소기업/소상공인을 구분하여 각각 지원규모 내 선정

4) 최종 적격업체 결정

→ 3.24.(월) 결과발표

→ 홈페이지 공지를 통한 적격업체 발표 및 개별 통보

5) 매칭과정

→ 3.24.(월) ~ 3.31.(월) 적격업체별 청년 매칭 및 고용 증빙서류 제출

→ 유사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조회 : 일모아시스템 또는 지자체 공문 등 조회 예정

→ 20개사⇔20명 매칭 완료

※ 기한 내 적격업체의 고용 불가 또는 참여기업의 기본자격요건 미달사항 발견 시, 후(後)순위 예비업체에 기회 제공

2 지원금 세부내용

□ 지원개요

○ 지원대상

- 업체 :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0개사 내외
 - ※ 대구시 소재 여부(사업자등록증 확인)
 - ※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부(정부 인증 중소기업확인서 확인)
 - 중소기업 : 소상공인 비율 = 5 : 5 정도
 - 업종 제한 없음
 - 기업평가를 통하여 지원대상 기업 선정(연혁, 규모, 건전성, 직원 근속연수 등)
 - 청년이 대표이거나 구성원 중 청년 비중이 높은 기업 가산점 부여

<참여기업 기본자격요건>

- 본 사업의 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이 타 인건비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
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기업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 2항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에 공표되지 아니한 기업
- 중대 산업재해 발생 명단에 공표되지 아니한 기업

- 청년 : 대구시 거주(예정) 만 19~39세 청년 20명 정도
 - ※ 참여청년 사업기간 내 대구시 주민등록 유지(주민등록등본 확인)
 - 기업 1개사(事)당 1인씩 매칭하여 지원 예정
 - 동일 청년이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
○ 지원기간

- 고용일로부터 8개월간 지원
 - ※ 8개월 지원사업이므로 청년과 근로계약시 최소 8개월 이상 계약 의무
 - ※ 정규직 고용 또는 2년 이상 장기 고용조건 기업에 가산점 부여
- 지원기간 내 퇴사·이직으로 인한 중도포기 시 지원 종료
 - ※ 중도 이탈시, 청년의 중도포기서 작성 필요
 - ※ 단, 선정기업의 귀책사유 없는 청년의 자발적 중도포기로 인한 지원 종료시, 퇴사일로부터 1개월 기한 내 대체 채용을 통한 잔여기간 지원 실시
 - ※ 기한 내 대체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, 후(後)순위 기업에 채용 권한 이양

○ 지원내용

- 신규 고용 청년에 따른 인건비 지급
 - ※ 2025. 1. 이후, 채용자는 신규 고용으로 간주
- 1인당 월 50만원 지원
 - ※ 기업 의무부담금 160만원 포함하여 세전 월급여 최소 210만원 이상 의무 보장
 - ※ 아래 근로조건 준수사항 참고

<근로조건 준수사항>

○ 법적 지위

- 근로기준법 제2조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,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(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)가 아니며, 세무신고 대상
-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
-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실업 대책에 해당(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 가능)

○ 근로 계약

-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(참여기업)과 체결
-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하되, 각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필요시 일부 변경 할 수 있으나, 청년 일자리의 안정성과 근무환경의 질을 우선으로 고려

○ 근로 조건

-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, 대구시,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
- 휴일과 휴가 : 근로기준법 기준(사업장의 특성 및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결정)
- 퇴직금 :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,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참여 기업에서 지급
- ※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준수여부 확인

□ 고용지원금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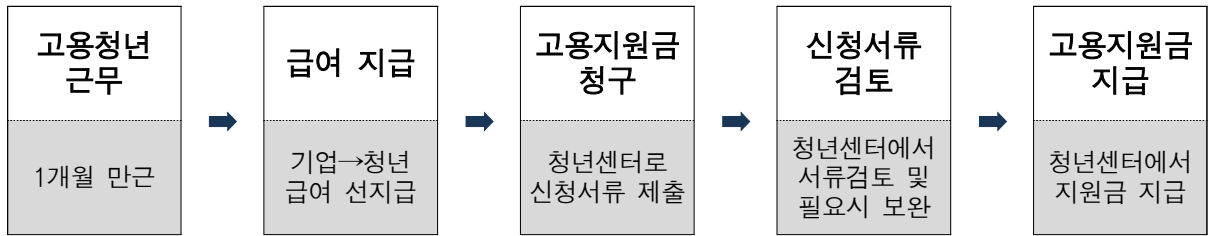
○ 지급시기 : 매 1개월마다 일괄지급

- 기업에서 매달마다 신청서류 제출
 - ※ 신청서류 목록 1) 고용지원금 신청서(청구서 및 통장사본 포함) 1부.
(*첨부1 확인) 2) 급여명세서 1부.
3) 이체내역서 1부.
4) 근로계약서 및 월별 근무일지 각 1부.
5) 주민등록초본 1부.

○ 지급방식 :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금으로 지급

- 기업에서 청년에게 임금을 선(先)지급하고, 임금지급 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
 - ※ 신청 시점에 미지급 임금이 확인될 시, 향후 지원금 지급 유예
 - ※ 미지급 내역 적발 시, 기지급 지원금 환수 조치

< 지원금 신청 및 지급 프로세스 >



○ 지급예시

- 4~11월(반복) : 익월에, 전(前)월 분에 대한 신청서 및 급여 증빙서류 제출
 [예시] 근무기간 : 4.1. ~ 4.30.
 급여지급일 : 5.2. (*휴일과 겹칠시, 직전 평일 지급/고용청년 급여일 고정)
 고용지원금 청구 : 5.10.
 신청서류 검토 : 5.10.~14.
 고용지원금 지급 : 5.20.
- 12월 : 전(前)월 분에 고용지원금 신청서 및 급여 증빙서류 최종 제출
 [예시] 근무기간 : 11.1. ~ 11.30.
 급여지급일 : 12.5. (*고용청년 급여일 고정)
 증빙서류 제출 : 12.10.
 증빙서류 검토 : 12.10.~16.
 고용지원금 지급 및 지원종료 : 12.19. (*휴일과 겹칠시, 직전 평일 지급)
- 고용지원금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지원 청년의 급여일(익월 5일/휴일과 겹칠시, 직전 평일)과 고용지원금 지급일(익월 20일)은 고정
- 고용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모든 과정은 청년센터에서 매달 전자우편을 통해 상세 안내 및 공지 예정
- 고용청년이 만근하지 않고 중도 퇴사시, 급여지원금(50만원)은 해당월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
 [예시] 고용청년이 5월 중도퇴사 하였다면,(근무기간 : 5.1.~5.20.)
 일할계산하여(500,000원÷31일×17일(주휴일 포함)=274,190원/원단위 절사) 지급

□ **근속 인센티브 지급**

- 지급내용 : 청년 1인당 80만원 지급
 - 지급시기 : 8개월 근속 근무한 청년에게 별도 인센티브로 지급
 - 지급방식 : 청년 개인통장으로 직접 지급
 - 업체의 8개월차 지원금 신청 시 청년이 작성한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동시 제출
 - 지원업체 귀책사유(폐업 등)로 고용이 종료되거나 또는 대체근무자의 경우, 사업종료시까지 근속 시 실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월 단위 인센티브 지급
- ※ 단, 최소 2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지급
- ※ 신청서류 목록 1) 청구서 1부.
(*첨부2 확인) 2)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1부.
3)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.

③ **기업 점검 및 관리**

- 점검대상 : 지원금 지급 기업 및 대상 청년
 - 점검내용
 - 기업 내 청년 근무실태(청년고용 근로조건 준수사항 포함)
 - 지원사업 관련 서류 보관상태
 - 지원사업 관련 기업·청년 의견 청취
- ※ 현장방문 최소 1회 이상, 필요시 서면 점검 등도 실시
- 점검시기 : 지원기간 내 업체별 1회 이상
 - 특별한 이슈 발생 시 수시 점검 실시
 - 점 검 자 : 시(市), 사업수행기관(청년센터)
 - 조치사항
 - 지원조건 위반 등 발생 시 개선 및 필요시 지원금 환수 등 조치
- ※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(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), 34조(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) 규정에 근거함
- ※ 참여업체 및 청년이 지원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, 주의 및 시정지시, 경고, 참여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(필요시 형사고발 가능)
 - 건의사항 등 청취한 의견 수렴하여 추후 사업추진 시 반영

사업장명 기재 또는 로고 삽입

수 신 처 대구광역시청년센터장

제 목 「2025 지역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」 청년고용지원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(4월분)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2025년 지역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의 청년고용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.

- 사업명 : 2025 지역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
- 신청자
 - 사업장명 : **사업장명 기재**
 - 주소 : **사업장 주소 기재**
- 고용지원금 신청내역

신청횟수	성명(고용청년)	근무기간	금회 신청금액
1회차(4월분)	000	2025.04.01.~04.30.(1개월간)	500,000원
합 계			500,000원

- 입금계좌번호 : **사업장 계좌번호 기입**
 - *본 사업 전용통장으로서 본 사업 예산만 집행할 수 있는 별도의 통장 마련(0원 통장)
 - *[붙임1]청구서의 통장사본과 동일한 계좌번호 기입(확인 필수)
 - *최초 지급통장으로 매월 지급(계좌 중도변경 불가)

- 붙임 1. 4월(전월) 고용지원금 청구서 및 통장사본 1부.
2. 4월(전월) 고용청년 급여명세서 1부.
 3. 4월(전월) 고용청년 이체내역서 1부.
 4. 4월(전월) 고용청년 근무일지 1부.
 5. 고용청년 근로계약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. 끝.

사업장명

대표자명 (직인)

(사업장명 기재)

담당자	000	대표	000
시행	사업장명-고용지원금-25-01(2025.05.10.)호	접수	
(주소)	대구광역시 00구 00로 00빌딩. 2층	(이메일)	00000000@hanmail.net / 공개
(전화)	053-000-0000		

[붙임1-1]_청 구 서

- 고용지원대상 : 000(1명)
- 고용 기간 : 2025.04.01.~04.30.(1개월)
- 금 액 : 500,000원

상기 금액을 2025년도 지역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의 “고용청년지원금(4월 신청분)”으로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금계좌	(본사업전용통장 기입)
은행명	(본사업전용통장 기입)
예금주	(본 사업장 명의로 된 통장)

2025. 05. 10.

청 구 자 : **사업장(사업장명) 대표(대표자명)** (직인)

대구광역시청년센터장 귀하

[붙임2]_급여명세서

사업장명		2025년도	4월
소속		직책	
이름		지급 일자	2025.05.02.

급여		공제내역		비고
급여(청년 고용지원금)	500,000원	국민연금	원	두루누리 적용
급여(사업장 자부담금)	1,600,000원	건강보험 (장기요양보험 포함)	원	두루누리 적용
		고용보험	원	해당없음
		소득세	원	
		주민세	원	
급여 합계	2,100,000원	공제합계	원	
실지금액		원		

- ※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4대보험 지원을 받는 경우, 해당 일경험 청년에게 사전 고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.
- ※ 비고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.

수고하셨습니다.
2025. 05. 02.

사업장명 대표자명 (직인)

[붙임3]_이체내역서(이체확인가능서류)

(아래 예시와 같이 본 사업 전용통장에서 지출된 이체내역을 증빙하여 첨부)

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

NH Bank

현재시간 : 2020년 09월 29일 14시 27분 40초

계좌번호		예금종류	보통예탁금
예금주명		현재통장잔액	0
조회기간	2020/09/05 ~ 2020/09/29	현재지급가능잔액	0

● 입출금거래내역

(단위: 원)

거래일시	출금금액	입금금액	거래후잔액	거래내용	거래기록사항	거래점	이체메모
2020/09/29 14:26:52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	0	G-우리은행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농협 150056	
2020/09/29 14:25:25	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인터넷당행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농협 150051	
2020/09/11 16:28:35	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PC하나은행	(사) 대구사회연구소	하나 0815017	

- 고객님의 요청하신 대로 위와 같이 처리되었습니다.
- 본 확인증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.
- 농협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

(스캔하여 첨부 또는 사진찍어 첨부하고 아래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)

원본대조필	(인)
-------	-----

[붙임4]_근무일지

고용청년 성명	
고용청년 연락처	

사업장명	
담당자성명	
담당자번호	

구분		근로시간 (시간별 상세기입)	총근로 시간	주요근로내용	일경험청년 (서명)	청년사업장 (서명)
일자	요일					
4월						
1	화	09:00~12:00, 13:00~18:00	8	상세내용 기입	자필서명	자필서명
2	수					
3	목					
4	금					
5	토					
6	일					
7	월					
8	화					
9	수					
10	목					
11	금					
12	토					
13	일					
14	월					
15	화					
16	수					
17	목					
18	금					
19	토					
20	일					
21	월					
22	화					
23	수					
24	목					
25	금					
26	토					
27	일					
28	월					
29	화					
30	수					

※ 근무시간, 근무내역, 결근, 조퇴, 지각, 휴일 등 표기.

※ 근무일지는 출력하여 작성 및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.

[붙임5-1]_근로계약서

(아래 예시와 같이 해당 고용청년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)

필수 기재 사항

표준근로계약서(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)

○○○불산 (이하 "사업주"라 함)과(와) ○○○ (이하 "근로자"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계약기간 : 2023년 3월 5일부터 2024년 3월 4일까지
2. 근무장소 : 본사 마케팅팀
3. 업무의 내용 : 영업 및 마케팅 관리
4. 소정근로시간 : 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: 12시 00분~ 13시 00분
5. 근무일/휴일 : 매주 월~금요일 (또는 매일단위)근무, 주휴일 매주 일요일
6. 임금
 - 월(일, 시간)급 : 2,200,000 원
 - 상여금 : 있음 () 선, 주식, 여금휴가 전 500,000 원, 없음 ()
 - 기타급여(세수당 등) : 있음 (), 없음 ()
 - 식대 200,000 원, 가족수당 100,000원
 -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 5 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
 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지급(),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()
7. 연차유급휴가
 -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8. 사회보험 적용여부(해당란에 체크)
 -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
9. 근로계약서 교부
 -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10.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
 -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
11. 기 타
 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

2023년 3월 5일

(사업주) 사업체명 : ○○○불산 (전화 : ○○ - ○○○ - ○○○○)
 주 소 : ○○시 ○구 ○○대로 ○○○
 대 표 자 : ○○○ (서명)

(근로자) 주 소 : ○○시 ○구 ○로 ○○○
 연 락 처 : ○○○ - ○○○○ - ○○○○
 성 명 : ○○○ (서명)

(스캔하여 첨부 또는 사진찍어 첨부)

원본대조필

(인)

청구서

대 상 자	성 명	000	주민등록번호	910101-1234567
	회 사 명	주식회사 00	직 위/직 급	00팀/사원
	계좌번호	은행:	계좌번호:	
	청구내용	2025 지역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사업 근속 인센티브 신청 (*근무기간 : 2025.04.~11./8개월간)		

[개인정보 처리]

본인은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며, 수당 지급을 위하여 성명, 소속 및 직위, 주소, 은행계좌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당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동의미동의

[고유식별정보의 처리]

본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신고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)를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동의미동의

청구금액 (단위: 원)		공제금액 (단위: 원)	
합계	800,000원	합계	0원
지원금	800,000원	-	-
-	-	-	-
-	-	-	-
차인청구금액 (청구금액-공제금액)		800,000원	

2025. 00. 00.

청구 및 수령자 성명

(서명)

대구광역시 청년센터장 귀하

신분증 사본

(아래 예시와 같이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)



(스캔하여 첨부 또는 사진찍어 첨부하고 아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)

원본대조필	(서명)
-------	------

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

(아래 예시와 같이 자격 취득일과 현재 가입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)

출력일시: 2021.12.06 14:58

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					
발급번호			발급일시		
주민(외국인)등록번호			성명		
■ 가입 내역(발급일자 현재기준)					1 / 1
구분\내역	성명	가입자종별	사업장 관리번호	사업장명칭	자격취득일 (신고접수일)
국민연금		사업장가입자			2021.11.01 (2021.12.06)
건강보험		직장가입자			2021.11.01 (2021.12.06)
산재보험		사업장가입자			2021.11.01 (2021.12.06)
고용보험		사업장가입자			2021.11.01 (2021.12.06)
<p>▷ 위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[확인용]으로 신청 발급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- [확인용]은 4대 사회보험의 업무목적용 위해서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재직용 영문, 경력용 영문, 대출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시에는 발급 기관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- 타 기관 제출을 위한 용도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각 공단 지사 할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▷ 위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받아 제공하는 것입니다. (문의전화: 국민연금 1355, 건강보험 1577-1000, 산재·고용보험 1588-0075)</p> <p>-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공단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- 과거 가입내역은 해당 보험별 각 공단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▷ [산재보험]의 경우, 전업업 및 불법영업 등 '자진신고 사업장'은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'자격취득일'은 표기되지 않습니다.</p> <p>▷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[사업장 관리번호]를 기본으로 작성되었습니다.</p>					
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.		위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.		위와 같이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.	
국민연금 이 사		국민건강 이 사		근로복지 평택지	
국민연금 이 사		국민건강 이 사		근로복지 평택지	
국민연금 이 사		국민건강 이 사		근로복지 평택지	
국민연금 이 사		국민건강 이 사		근로복지 평택지	

▷ 위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이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받아 제공하는 것이며, 발급사실 여부도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4대 사회보험 보험사이트(www.4insure.or.kr)의 [발급사실확인]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"출발한 정보연계서비스, 4대 사회보험이 함께 합니다."

(스캔하여 첨부 또는 사진찍어 첨부하고 아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)

원본대조필 (서명)